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강동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87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3월 28일

발 의 자: 강동길, 김규남, 김길영,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김원태, 남창진, 민병주,
박승진, 박철성, 서준오,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이봉준, 이소라, 이영실,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전병주, 최재란,
한·신, 홍국표 의원(26
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조례가 제정 후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된지 3년이 지난 조례는 입법평가의 대상이 됨(안 제4조)
- 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후 입법평가”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시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의 대상)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 중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

제5조(평가기준)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8.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6조(평가실시 및 기본자료 제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에 대해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한 후,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사후 입법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방향 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소관부서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시장은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